

■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 추계신고

기준 경비율	사업소득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준경비) ▶ 주요경비(임종)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기준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 50%' 적용)
-----------	---

■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의 순서로 공제한다.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킨다.

■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구 분	영세율제도	면세제도
특징	소비자국 과세원칙, 수출장려	저소득층의 역진성 완화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매입세액	공제가능	공제불가
면세정도	완전면세	불완전면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의 국세에 대한 보증적 납세의무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징수부족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 자금출처조사 소명금액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된다.

미입증금액 < Min[취득재산가액 × 20%, 2억 원]

■ 양도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①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 ②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 ③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④ 협의매수, 수용, 구매, 경매 등	① 한지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② 보류지로의 총당 ③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④ 양도담보 제공 ⑤ 매매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환원 ⑥ 연결한 토지의 공유물 분할 ⑦ 신탁해지 ⑧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

■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연금저축 한도(퇴직연금포함 통합 한도)	공제율
4,500만 원 이하(5,5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15%
4,500만 원 초과(5,500만 원)		12%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로 계좌 전부 또는 일부가 연금계좌로 이체된 경우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의 금액 : 연금계좌세액공제 추가 적용

■ 연금수령 시 과세 : 연금소득세

소득원천	세금의 종류	세율	종합소득 합산 여부
이연퇴직소득	연금 소득세	퇴직소득세율 × 70%(60%/50%) (연금실수령연차 11부터는 60%, 연금실수령연차 21부터는 50%)	합산하지 않음 (무조건 분리과세)
그 외 소득(운용 수익 및 공제받 은 자기부담금)		원천징수세율 3 ~ 5%	연간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1,500만 원 초과 시 합산 또는 분리과세(15%)

이패스코리아 회원님께 드리는 선물

▶ 신규가입 선물

이패스코리아 신규 가입시 수강료 5% 할인쿠폰 지급

은행·증권사 인기! 연금상담전문가 저자 직강!

▶ 국내 최초 연금상담 전문자격증!

▶ 연금 준비단계부터 은퇴 후 전반적인 연금생활까지, 공적·사적 연금 등 연금에 관한 종합적·전문적 상담을 수행합니다.

▶ 11월대비 연금상담전문가 합격보장반

- 얼리버드 교육비 할인(~8/30) : 135,000원 → 121,500원
- ★ 5명 이상 동시신청 시 10% 추가할인 → 109,350원 ★
- 2026 신규강의&11월 7일 시험일까지 수강 보장!
- 실제 시험도 고사장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하게 응시!

2026년 시험 안내

▶ 11월대비 은퇴설계전문가 합격보장반

- 시험일 : 11월 21일, 수료마감일 : 11월 2일
- 구성 : 정규이론 + 핵심요약 & 문제풀이
- 교재 : 기본서(3권), 이패스 요약 & 문제풀이집 제공
- 교육비 : 195,000원
- 혜택 : 실제 시험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하게 응시!
불합격 시 수강1회 연장 / AFPK와 상당수 겹치는 내용
으로 단기합격 가능!

▶ 11월대비 외환전문역 I종 or II종 환급반

- 11월 또는 27년 첫 시험 합격 시 환급적용
- 이패스코리아 제작문제집 & 불합격 시 수강연장 1회 제공
- 교육비 144,000원

▶ 11월대비 은행FP 1,2부 환급반

- 과목별 핵심이론 요약부터 모의고사까지 한 권에 담은 이패스 코리아 자체 교재 제공
- 환급기회 2번! 11월 또는 27년 첫 시험 합격 시 환급 적용
- AFPK와 유사한 과목 구성 및 학습내용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계속교육학점 과정

▶ 윤리1학점 포함 일반 과정 최소 2학점부터 최대 101학점까지
다양한 분야의 단과, 종합, 패키지 구성 & 수료보고 대행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과정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은
홈페이지 <http://www.epasskorea.com>
상담전화 1600 - 0522

꼭 시험에 나오는 핵/심/체/크

2026년 8월 22일(토) 시험대비

AFPK

이패스코리아가 여러분의 합격을
지원합니다!



❖ AFPK 시험정보 ❖

- ▶ 시험 시간 : 8월 22일 (토) 14 : 00 ~ 17 : 20
- ▶ 합격자발표 : 9월 11일 (금) 오전 9:00

진정한 전문가로 가는길

epasskorea
국제 · 국내 자격증 실무교육

1과목 재무설계개론

- 2000년 4월 한국FP협회 창립 / 한국FP협회(회원관리-회원중심 활동), 한국재무설계협회(자격인증, 시험, 등)
- 가계 재무관리의 필요성 증대(급속한 고령화, 기대수명 증가, 노후준비, 유지, 인출전략, 종합적 재무 계획 요구, 공적연금 우려, 가계의 재무관리 필요성)
- 금융소비자 보호 및 전문서비스 수요 증가(정보 비대칭, 복잡화, 불완전판매, 소비자 보호)
- 재무설계사의 역량 : 지식,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조

평가지표	재무비율
가계수지상태지표	월 총지출/월 순수입 * 월 총지출=변동지출+고정지출
비상예비자금지표	현금성자산/월 총지출

- 소비성부채비율의 분모는 월 순수입, 주거관련부채비율·총부채상환비율의 분모는 월 총수입

- 휴리스틱, 편향, 자기과신, 대표성 오류, 닛 내리기 효과, 프레임링 효과, 심적회계, 소유효과, 후회회피, 낙관주의 오류, 손실회피, 자기통제 오류

- 부채관리 : ① 담보인정비율(LTV) ② 총부채상환비율(DTI) ③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30일 이하), 이자율 채무조정(프라이빗 아웃 89일 이하), 개인워크아웃 90일(3개월) 이상] 총채무액 15억, 보증인 동일 효력
- 법원 : 개인회생제도(총채무액 25억), 개인파산제도(농비, 도박 면책 허용 안 됨),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유사, 보증인 동일한 효력 없음

■ 전문금융소비자 적용

6대 판매규제 중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 광고규제), 위법계약해지권

■ 일반금융소비자 적용

6대 판매규제(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 광고금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 고객에 대한 의무 : 충실의무, 고지의무, 진단의무(투자자 적합성), 자문의무, 객신유지의무

- 윤리원칙 : 고객이익 우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적절한 주의 및 근면성의 원칙, 전문능력 유지의 원칙, 이해상충 관리의 원칙, 비밀 유지의 원칙, 정보공개 의 원칙, 의사소통의 원칙, 법규 준수와 전문가 정신의 원칙

- 행동규범 : 업무수임과 계약, 정보제공과 투명성 확보, 고객 자산 및 정보의 보호, 전문적 직무 수행 및 관리, 인종기관 및 사회에 대한 의무

- 결격사유(따산 5년, 금고 3년, 신념 1년, 집행유예 1년, 음주·미약 1년, 파면·해임·자격취 소 3년, 자격정지·직무정지·업무정지 1년, 자금유용 조사, 재판 중, 협회 인증 사칭 등 3년 등)

2과목 은퇴설계

■ 국민연금(연금보험료 9.5%, 소득대체율 43%) *

-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1년 이내, 50세 이상 5년 이내 / 추후납부 10년 미만(119개월)의 범위 내(최대 60회 분납가능) /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6개월 체납 자격 상실
- 실업크레딧(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본인부담 25%) 12개월 한도
- 출산크레딧 : 자녀(12개월), 2자녀(24개월), 3자녀 이상(1명당 18개월 가산, 상한 없음) / 군복무크레딧 12개월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52년생 이전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6년생	69년생 이후
수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노령연금 *

(10년 이상), 조기노령연금(최대 5년 일찍, 1년 당 6%감액), 소득이 있는 업무(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노령연금연기제도(노령연금수급연령(지급 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부터 5년의 기간 이내, 신청횟수 제한 없음, 매1년당 7.2%)

■ 분할연금

- 이혼, 수급개시연령 도달,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해당 연금액의 1/2
- 반환일시금 * 반납은 최대 24개월까지 허용
- 중복급여의 조정 * : 노령연금 선택(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유족연금 선택 (유족연금 지급)
- 공적연금 연계 * : 10년(군인연금과 연계 20년), 임의계속가입기간(연계대상기간 미 포함, 연계급여 연금액 산정 시는 포함)

- 유족연금 급여 수준(가입기간 기준)**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
- 장애연금 급여 수준** :
 - 1급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 2급 기본연금액의 80%+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 4급 기본연금액의 225%(일시보상금)
- 퇴직 급여 직접 지급 가능**
 - 55세 이상,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퇴직위로금 또는 명예퇴직금
- 담보제공 및 인출** : DB형은 중도인출 금지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역산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대학등록금, 결혼비용, 장례비 부담]은 담보제공에 한함

3과목 부동산 설계

부동성	- 부동산 활동 및 시장의 국지화 -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에서 현장답사활동이 필요 - 부동산중개업이 제도화되는 근거가 됨
부증성	-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달리 물리적인 양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음 -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부족문제가 발생하여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토지 의 공급곡선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또는 매우 비탄력적으로 만들 - 부증성은 토지의 희소성을 지속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토지 이용을 집약 화시킴
영속성	- 감가상각 적용이 배제 -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를 관리해야 함
개별성	- 개별성으로 인해 비대체성의 특성을 갖고 있음 - 토지의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을 배제

수요의 변화(증가요인)	공급의 변화(증가요인)
- 인구 및 가구 수의 증가 - 소득수준 증가(정상재의 경우) - 금리의 인하 - 대체재의 가격 상승 및 수익률 악화 - 부동산 조세의 세율 완화 - 공·사법상 규제 완화 -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	- 공급자의 수 증가 - 건축기술의 발달 - 원가절감과 공사기간의 축소 등

구분	물권	채권
법적 성격	- 대체로 강행규정임 - 물건에 대한 지배권	- 대체로 임의규정임 - 특정인에 대한 요구권
객체	현존·특정·독립의 물건	채무자의 금부행위
특징	- 절대권(모든 사람에게 주장) - 배타성 존재(독점성)	- 상대권(특정 상대방에게 주장) - 배타성이 없음(평등성)
효력	- 채권에 대한 우선성 - 물권 간 시간적으로 우선권	채권 간 평등주의

- 지목**
 - 1필 1목의 원칙 단,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의 일부가 주택 또는 시설관리사무소 등으로 쓰이는 면적은 대로 한다.
 - 하천과 구거 : 하천(자연적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구거(인공적인 수로부지 또는 자연적 유수의 부지로 소규모 수로부지)
 - 도로 : 휴게소부지도 도로에 해당함
 - 부호의 사용 : 초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차/천/원 은 제외

구분	경매	공매
명도책임	매수인	- 유입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 수탁자산은 매도인 - 압류자산과 국유재산은 매수인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인도명령 후 명도소송 진행	인도명령제도 없으며 명도소송만 가능
보증금액	최저매각가격의 10%	입찰가격의 10% (1천만 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
매각방법	기일입찰 방식	기간입찰 방식

구분	해제	해지
효력	소급효	장래효
의무	원상복귀의무	청산의무
손해배상책임	인정	인정
적용	1회성 거래(매매계약 등)	계속적 거래(임대차 등)

구분	재개발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열악	양호
건축물	노후·불량	노후·불량
재건축진단	실시하지 않음	실시함
세입자 대책	있음	없음
개발부담금	없음	부과(초과이익환수법)

- 리츠**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일반 REITs) : 실체형 회사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명목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 : 명목회사

4과목 상속설계

- 상속결격**(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음), 고의,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 조건은 상해로 인한 사망은 포함 안 됨. (낙태도 상속결격)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됨) 사기, 또는 강박, 위조, 변조, 파기

- 대습상속의 인정요건** : 전사망, 상속결격, 동시사망의 추정 또한 상속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만 인정
 - 상속포기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상속의 승인과 포기** (고려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 종대한 과실 없어야함, 3월내에 한정승인 가능,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미성년자의 특별한정 승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확정일자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

- 간주상속재산** : 생명보험금 및 손해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단, 법령에 따른 유족연금 등은 제외

- 추정상속재산** :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 사건중여재산**(상속인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5년 이내))

-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만 적용·기초공제(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 분납 : 1천만 원 초과, 연부연납 : 2천만 원 초과, 물납 : 2천만 원 초과, 증여는 물납 불가

- 비과세 증여재산** : 연간 4천만 원 이내의 보험금, 장애인 신탁재산(5억 원 한도)

- 증여재산가산액** : 금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금번 증여와 합산 과세

-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원칙 : 시가평가)
 평가기간 : 상속(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 계약 관계별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 과세 여부**
 납입한 계약자 등이 생존한 경우 증여세 과세,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 본인이 납입한 경우 세금 없음

5과목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 물리적 위태** (빙판길 운전, 주유소에서 담배 등)

- 도덕적 위태** (부정직, 무책임, 수리비 과잉 청구, 보험사기, 자동차 사고 조작, 공장에 방화 등)

- 정신적 위태** (부주의, 무관심, 고의성은 없으나 손실 발생을 방관, 태도 위태, 주의력 감소로 문 열어둔 채 외출, 정신적 위태는 넓은 의미에서 도덕적 위태에 포함)

- 보험제도의 기본원리**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급부·반대급부의 원칙(개별 수지 상등의 원칙)
 ※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이득금지원칙)

- 보험계약의 특성**
 불요식·낙성계약, 유상·쌍무계약, 조건부계약, 사행(요행)계약, 부합계약
 ※ 사망보험은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예외 있음)일 경우 무효 처리된다.

-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 (3가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은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 미 설명,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은 때

- 보험설계사**
 중개 / 제1회 보험료 수령권 / 보험대리점(계약체결 대리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 장애인전용보험**
 세액공제 연간 10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16.5%), 연간 보험금 4,000만 원 한도 내 증여세 비과세

- 감액완납** : 보험료 미납, 보험금 감액, 보장기간 동일, 해약환급금 미지급

- 연장정기** : 보험료 미납, 보험금 동일(특약은 해지), 보장기간 단축, 해약환급금 미지급

- 보험계약 해지 불가** :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 / 보험금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 1년) 경과 / 계약 체결 후 3년 경과 / 사기에 의한 계약은 5년 경과

- 상해보험** : 급격(예측불가능이나 불가피성)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세 가지 조건 충족 및 인과관계 존재해야 한다.

- 손해보험** :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적이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어 사고 발생의 여부와 사고 발생 시간 및 규모가 모두 불확정적인 특징이 있다.

- 주택화재보험** (화재, 바람, 폭발, 파열 등 보상) 80% Co-Insurance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일반화재보험에서 일반물건(재고자산 제외)은 주택화재보험 동일하게 계산

- 배상책임보험** : 보험가액, 중복보험, 초과보험의 개념이 없다. 피보험자의 과실, 즉 부주의를 담보한다.

- 자동차원제도(장기화재보험)** :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또는 이하)일 경우 잔여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배상책임의 주체(운행자), 책임형태(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 입증책임(가해자, 운행자), 손해배상 보장제도(의무보험, 직접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등)

- 반의사불벌 또는 보험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배상) 은 1인당 보상한도 유한, 1사고당 보상한도는 없음, 대물 보상은 1사고당 2천만 원 한도로 보상),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 종합보험(임의보험)**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상 책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 운전자보험** :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하는 비용(의료비,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면허취소위로그금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6과목 투자설계

- 고용률과 실업률**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취업률 =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100 - 실업률
 - 고용률 = 취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 100

상황	평가	비고
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	저평가상태	내재가치 > 시장가격
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	적정상태	내재가치 = 시장가격
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	고평가상태	내재가치 < 시장가격

자본시장선 (CML)	- 총위험(<i>σ</i>)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 효율적 포트폴리오로만 구성
증권시장선 (SML)	- 체계적 위험(<i>β</i>)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 개별 자산,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할지라도 증권시장선상에는 존재

- 주식스타일**
 - 가치스타일 : 워렌버핏
 기업의 미래 성장성보다는 현재의 수익이나 자산의 가치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주식에 투자하는 운용방법 / 저PER 투자, 고배당수익률 투자 등
 - 성장스타일 : 필립피셔
 기업 미래의 수익성(성장성)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운용전략 / 매출증가율이 시장보다 높으며, 고PER, 고PBR을 보이는 주식 등에 투자

- 펀드의 기준가격**
 - 국내투자 펀드는 당일 종가를 사용하여 기준가격 산정,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전일 종가를 사용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함
 - 해외주식형 펀드의 기준가격은 이를 전 종가를 반영한 것이므로 어제와 증가변동에 반영되지 않음에 유의

- 패시브 ETF 및 액티브 ETF**
 - 패시브(passive) ETF : 비교지수 수익률을 추종
 - 과리울을 일정 수준(국내자산ETF는 1%, 해외자산ETF 2%) 이내로 제한
 - 액티브(active) ETF :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
 - 과리울에 대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상관계수 제한 존재(ETF의 기준가격 일간 변동률과 기초지수 일간 변동률 간 상관계수가 0.9(액티브ETF는 0.7) 미만인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구분	추가연계증권 (ELS)	추가연계펀드 (ELF)	추가연계신탁 (ELT)	추가연계예금 (ELD)
발행기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근거법률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법적형태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	예금
예금자보호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손익구조	사전약정 수익률	실적배당	실적배당	사전약정 수익률

액티브전략	- 듀레이션전략 - 크레딧전략
패시브전략	- 인덱싱전략 - 만기보유전략 - 현금흐름일치전략

전략적자산 배분	- 중장기적으로 자산별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과정 - 투자자의 투자목표(goal), 투자기간 및 투자자성향을 반영하여 수립
전술적자산 배분	- 자산별 투자 비중을 조정하여 초과수익을 달성 - 자산별 비중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액티브 투자전략의 일종

- 투자전략의 조정**
 - 리밸런싱(rebalancing)
 - 저점매수·고점매도(buy low, sell high)전략
 - 전술적 자산배분은 액티브 전략인데 비해 리밸런싱은 원래의 전략 수준으로 재조정 하므로 수동적 관점에서 비중을 재조정하는 것임
 - 마켓타이밍(market-timing)
 - 성고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산은 아예 투자하지 않는 등 매우 공격적으로 자산배분
 - 비교지수를 두지 않고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전략에 주로 사용

7과목 세금설계

-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① 납부	② 총당
③ 부과분의 취소	④ 조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⑤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5년, 다만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